

#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http://www.nowon.kr)

## 제2318호

2026. 4. 30.(목)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원구청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  
 전화 : 02-2116-3414

# 차 례

## 공 고

- 제2026-8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3
- 제2026-81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 인 사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다.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제10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162, FAX : 02-2116-4610, E-mail : 201712316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다.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대상
-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국장 2명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회계·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계감사인의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회계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중 최고 득점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단, 단독 후보자인 경우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 관련)**

**□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A	B	C	D	E
정량평가 (20)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최근 매출실적 평가	5	5	4	3	2	1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법인규모 평가	5	5	4	3	2	1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유사 회계감사실적 평가	5	5	4	3	2	1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준법·청렴도 평가	5	5	4	3	2	1
정성평가 (6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20	15	10	7	3
	감사수행계획의 내용 구성 및 제안의 타당성, 회계감사자문·교육 기회 제공(업무지원)	20	20	15	10	7	3
	용역수행 인력의 우수성(인력구성 및 주요경력)	20	20	15	10	7	3
제안가격 (20)	업체 제안금액	20	제안가격 평점산식 적용				

**□ 평가 기준표**

평가점수	평가기준	배점	A	B	C	D	E
정량평가 (20)	최근 3년간 법인의 매출실적	5	2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20억 이상	20억 미만
	소속 공인회계사 보유수	5	100명 이상	5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최근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실적	5	15건 이상	10건 이상	6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최근 3년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형법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처벌내역	5	없음	1건	3건 미만	5건 미만	5건 이상
정성평가 (6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감사수행계획의 내용 구성 및 제안의 타당성, 회계감사자문·교육기회 제공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용역수행 인력의 우수성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 (주) 1. 수행능력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정한다.  
 2. 평가위원은 직무수행계획 분야만 평가한다.

3. 제안가격 평점산식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frac{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안한 가격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최승용
연 락 처	02-2116-3162

### < 관계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5항및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4. 1.>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4. 1.>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19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 1. 개정 이유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을 토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선정(안 제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162, FAX : 02-2116-4610, E-mail : 201712316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전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을 토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 나.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선정(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심사대상)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다.

제4조(재심사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자체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 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

3. 그 밖의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구청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7.>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 (「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 ③ 둘 이상의 시·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 1. 7.>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전문개정 2024. 1. 9.]

## 의견제출서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인 사

노 원 구

(발령 제120호)

구분	성명	발령내용	현 직	
			소속	직급
1	박준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계획국 미래도시과	지방시설 서기보시보(건축)

2026.4.30.字.

노 원 구

(발령 제123호)

구분	성명	발령내용	현 직	
			소속	직급
1	이재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미디어홍보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026. 5. 1.字.

노 원 구

(발령 제124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 직	
			소속	직급
1	이영란	8급(지방행정서기) 대우로 선발함	월계1동	지방행정 서기보
2	권명숙	5급(지방행정사무관) 대우로 선발함	기획재정국 징수과	지방세무 주사
3	최희전	5급(지방행정사무관) 대우로 선발함	기획재정국 지방소득세과	지방세무 주사
4	전정수	5급(지방보건사무관) 대우로 선발함	보건소 생활보건과	지방보건 주사
5	안운경	6급(지방시설주사(지적)) 대우로 선발함	도시계획국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 주사보(지적)

2026. 5. 1.字.

노 원 구

(발령 제125호)

구분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김희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4.30.)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지방세무 주사

2026. 4. 30.字.